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1): 연금제도의 체계 및 유형

김동겸 선임연구원

■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퇴직 이후의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연금제도(Pension Plan)임.¹⁾

- 연금제도는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볼 때, 국가 차원의 공적연금, 기업 차원의 퇴직연금, 개인 차원의 개인연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 중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주체가 되어 설립·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고용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퇴직 후에 급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계약을 의미함.

■ 각 국가마다 상이한 성격을 가진 노후소득보장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연금제도를 분류하는데 제약이 존재하나, World Bank나 OECD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연금제도를 유형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음.

- World Bank(2004)²⁾와 Holzmann and Hinz(2005)³⁾는 연금제도가 여러 개의 주(主, pillar)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Gillion et al.(2000)⁴⁾이나 OECD(2005)⁵⁾ 등에서는 연금제도가 다층(multi-tier)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 World Bank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일주(first pillar)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인 빈곤 축소를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이주(second pillar)는 사적으로 관리되는 강제 저축제도를, 삼주(third pillar)는 개인연금 등과 같은 개인의 자발적 저축을 의미함.

1) “pension plan”이란 용어는 retirement income plan, pension arrangement, pension scheme, pension system, pension provision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

2) World Bank(1994), Averting the Old-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3) Holzmann, R. and R. Hinz(2005),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World Bank, Washington,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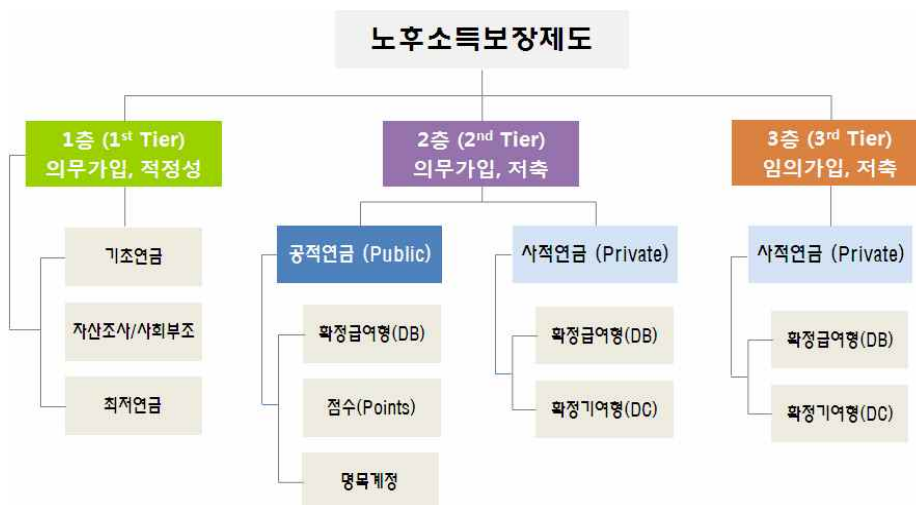
4) Gillion, C., T. Turner, C. Bailey, D. Latulippe, (2000), Social Security Pensions: Development and Reform.

5) OECD(2005), Pensions at a Glance.

■ 한편, OECD에는 총 3개의 층(tier)으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분류하고 있음.

- OECD에서는 연금제도가 법적으로 강제화 될 경우 그 운영주체(정부 또는 민간)에 관계없이 법정 제도(mandatory scheme)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정제도는 소득재분배(redistributive) 기능을 가진 1층과 저축(savings)⁶⁾의 역할을 담당하는 2층으로 구분할 수 있음.⁷⁾
- 한편, 3층의 임의제도(voluntary scheme)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연금제도로서,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며 급여결정방식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구분됨.
 - 확정기여형은 기여수준 및 적립금의 운영과 급여가 연동되어 있는 방식인 반면, 확정급여형은 근로기간 중에 납부한 기여수준이나 적립금을 운영결과가 연계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간과 근로기간 중의 소득에 기초하여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방식임.

〈그림 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제도)의 분류 체계



자료: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OECD(2004), Private Pensions OECD Classification and Glossary.

■ 노후소득보장체계 중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1층(first tier)을 구성하고 있는 연금제도로는 기초연금, 자산조사, 최저연금 등이 있음.

- 기초연금(basic pension)이란 과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요건(거주 및 기여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모든 노인층에게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

6) OECD(2011)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능을 소득재분배(1층)와 저축기능(2층)으로 보고 있으며, OECD(2005, 2007)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능을 소득재분배(1층)와 보험기능(2층)으로 분류하고 있음.

7)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부분은 절대액의 기초소득보장을, 보험부분은 적정소득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산조사(resource-tested or targeted plans)는 자산이나 소득조사를 기초로 최저한도의 소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제도를 의미하며, 최저연금(minimum pensions)은 노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 주는 연금제도를 의미함.

■ 2층의 저축부분은 은퇴 이후에도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비례연금제도로, 제공자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급여형태에 따라서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점수제도(Points Scheme), 명목계정(NDC: Notional Account)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⁹⁾

〈표 1〉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국가	1층(재분배기능)			2층(보험기능)		국가	1층(재분배기능)			2층(보험기능)	
	공적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공적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자산조사	기초연금	최저연금	유형	유형		자산조사	기초연금	최저연금	유형	유형
호주	●				DC	일본		●		DB	
오스트리아				DB		한국	●	●		DB	
벨기에	●		●	DB		룩셈부르크	●	●	●	DB	
캐나다	●	●		DB		멕시코			●		DC
칠레	●		●		DC	네덜란드		●			DB
체코		●	●	DB		뉴질랜드		●			
덴마크	●	●			DC	노르웨이			●	NDC	DC
에스토니아		●		Points	DC	폴란드			●	NDC	DC
핀란드			●	DB		포르투갈			●	DB	
프랑스			●	DB+Points		슬로바키아			●	Points	DC
독일	●			Points		슬로베니아			●	DB	
그리스			●	DB		스페인			●	DB	
헝가리				DB	DC	스웨덴			●	NDC	DC
아이슬란드	●	●			DB	스위스	●		●	DB	DB
아일랜드		●				터키			●	DB	
이스라엘		●			DC	영국	●	●	●	DB	
이탈리아	●			NDC		미국				DB	

자료: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 점수제도는 매년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점수(pension point)를 획득 한 후 은퇴 시 누적연금점수에 연금점수의 가치를 곱하여 연금급여를 수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공적연금제도인 명목계정은 개인별 연금계정에 각 근로자의 기여액을 기록하고 소정의 수익률을 적용해 주는 방식임.
- 한편, 연금제도는 재원조달방식을 기준으로는 부과방식(Pay As You Go)과 적립방식(Funded)으로도 구분할 수도 있음.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자가 지불한 기여금이 현재 퇴직자의 급여로 지출되는 방식이며, 적립방식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정에 자신의 기여금을 예치하고 그 금액이 투자되어 자신의 퇴직 급여에 이용되는 방식임.